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25 - 04698호

시행일자 2026. 7. 20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마약류 안전사용과 취급관리 교육 강화 협조 요청(식품의약품안전처)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-4443(2026.7.16.)

3. 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」 제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(의사), 마약류관리자(약사)만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·보관·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한해 종업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.

* 의사 등 마약류취급자는 「마약류관리법」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종업원을 철저히 지도·감독해야 함

4. 이와 관련하여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, 병·의원 등에서 마약류취급자를 위해 취급업무를 하는 종업원 등이 이용 가능한 ‘온라인 교육센터’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5. 이에,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취급자와 종업원이 규정을 잘 숙지하여 준수하고, 취급자는 종업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여 도난·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협조를 요청해온 바, 이를 귀회에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참여방법 등은 불임자료 참고

※ 불임

1.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.

2. 온라인 교육센터 관련 보도자료(참고)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사의협의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